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4. 12. 19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권영식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

(2014년 12월 1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권영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주택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 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법령 조항 변경(안 제1조)
 - 「주택법」제43조제8항을 「주택법」제43조제9항으로 변경
- ○「주택법」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택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주택법」제43조제8항을 법 개정에 따라 제43조제9항으로 변경하고,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.
- 현행「주택법 시행령」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 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,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.
-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「주택법」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전 관련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.

또한, 서울시에서도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, 향후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

발의연월일 : 2014년 11월 일

발 의 자 : 권영식의원 외 6명

1. 제안이유

「주택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 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법령 조항 변경(안 제1조)

- 「주택법」제43조제8항을 「주택법」제43조제9항으로 변경
- 나. 「주택법」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의2)

3. 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제43조, 제43조의3

「주택법 시행령」제118조제4항

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제9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: 주택과, 총무과, 기획예산과

라. 입법예고(2014. 11. 1 ~ 11. 7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제43조제8항"을 "제43조제9항"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구청장은 주택법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-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 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-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\circ }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1조(목적) 제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43조제9항----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 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 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신 설> 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리) ① 구청장은 주택법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43조의3에 따라 소 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 1.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 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으로서,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%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.